

자산보관 • 관리보고서

이 보고서는 집합투자기구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확인한 내용을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” 제 248 조제 1항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.

신탁업자명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문의가능 전화번호 : 02-2004-8963/0991

1. 집합투자기구의 개요

- 가. 집합투자기구 명칭:
삼성KODEX건설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]
 - 나. 집합투자기구 분류:
증권[주식] 집합투자기구
 - 다. 보관 • 관리기간: 2012.05.01 - 2012.12.31
 - 라. 집합투자업자: 삼성자산운용(주)
 - 마. 투자매매업자, 투자중개업자:
교보증권, 신한금융투자, 대우증권,
유진투자증권, 메리츠종합금융증권,
우리투자증권, 현대증권, 에이치엠씨투자증권,
동양증권, SK증권, 케이비투자증권,
하이투자증권, KTB투자증권

2.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

변경일자	변경사유	주요 변경내용	
		변경전	변경후
2012.06.29	제12조 (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만, 최초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매 1년간으로 한다. 다만, 신만, 최초회계기간은 최초설정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일까지로 하며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의 각호에 따라 한다. 다만, 신만, 최초회계기간은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1. 최초회계기간 : 최초설정일로부터 2010년 4월 마지막일까지 2. 제 1호의 회계기간 경과 후의 회계기간 : 최초회계기간 익일로부터 매 1년간

			3. 2012년 4월 30일 경과후의 최초회계기간 : 2012년 5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
			4. 제 3 호의 회계기간 경과후의 회계기간 : 2013년 1월 1일부터 매 1년간
2012.06.29	제38조 (투자신 탁보수)	① 생략 ② 투자신탁 보수의 계 산기간(이 하 “보수 계산기간” 이라 한다) 은 제41조 의 투자신 탁분배금 지급기준일 (단, 회계 기간 말일 의 익영업 일을 제외 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 일”이라 준으로 산 출하되, 구 체적인 보 수계산기간 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 출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생략 2. 제1호의 보수계산기 간 이후 도 래하는 보 수계산기 간: 제1호 의 보수계 산기간 종	① 생략 ② 투자신탁보 수의 계산기간 (이하 “보수 계산기간” 이 라 한다)은 제 41조의 투자신 탁분배금 지급 기준일(단, 회 계기간 종료일 을 제외하며, (단, 회계 기간 말일 의 익영업 일을 제외 하며, 이하 “분배금 지급기준 일”이라 준으로 산 출하되, 구 체적인 보 수계산기간 은 다음 각 호에서 정 하는 바에 따른다. 이 경우 당해 보수의 인 출은 투자 신탁분배금 지급일로 한다. 1. 생략 2. 제1호의 보수계산기 간 이후 도 래하는 보 수계산기 간: 제1호 의 보수계 산기간 종

		료일 익일 부터 최초 로 도래하 는 분배금 지급기준일 까지 3. 생략	
2012.06.29	제39조 (투자신 탁재산의 운용비용 등) ①생 략 ②-5. 수익 자총회 관 련비용 6.~11 생 약 추 가	②-5. 전체 수 의자로 구성되 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 6.~11 생 략 12.추정 NAV 산출 등 한국 거래소를 통한 투자신탁 관련 정보산출 비용	
2012.06.29	제41조 (투자신 탁분배금 의 지급) ① 생 략 1. 지급기 준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막일 및 회 계기간 계기간 일의 업일 1. 지급기준 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말종료일, 다만 의영회계기간 종료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	① 생 략 1. 지급기준 일: 1월, 4월, 7월, 10월 마지막 영업일 및 회계기간 말종료일, 다만 의영회계기간 종료 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	

3. 투자운용인력의 변경

변경일 자	변경사 유	성명	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	협회등록번 호
2012.0 6. 29	말소	김남 기	-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삼성자산운 용 신탁회계팀 - 채권 2팀 - 채권 1팀 - ETF 운용팀	2109001159
2012.0 6. 29	신규	김남 의	- 한국과학기 술원 산업공학학 사 - 삼성자산운 용 ETF 운용 1팀	2110000109

4.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5.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의 그 내용

- 해당사항없음

6. 회계감사인의 선임 · 해임에 관한 사항

회계 감사인명	변경전				변경 일	변경후			
	계 약 기 간	계 약 방 법	감 사 보 수	회 계 감 사 인 명		계 약 기 간	계 약 방 법	감 사 보 수	회 계 감 사 인 명
안진회계 법인	1 년	55 만 원	서면 계약	-	-	-	-	-	-

*모자형집합투자기구의 경우, 위에 명기된 회계감사인보수 금액은 모집합투자기구 및 자집합투자기구에서 지급되는 보수 금액 모두를 포함하는 금액입니다.

7. 법 제247조 제5항 각호의 사항 확인

-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
 - 부합함
-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적정함
-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
 - 공정함
-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이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
 - 적정함
-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, 집합투자신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된 경우 신탁업자의 시정요구 및 이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
 - 해당사항없음
- 집합투자재산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되었는지의 여부
 - 본 항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9조 제 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신탁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신탁업자의 확인사항이 아님
- 집합투자증권의 추가발행 시 기존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없는지 여부
 - 해당사항없음

8. 그 밖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

-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예금과는 달리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못함에 따라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이 투자신탁의 운용 및 투자 등에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